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조문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기본법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1조)
- 나. 포상금 지급대상 및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다. 포상금 지급대상에 세외수입을 포함(안 제2조)
- 라.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4조)
- 마.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바. 포상금의 환수(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조 례 안 : 붙임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세입(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나.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다.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라.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4.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구미시의 공무원중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

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 중부와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illegible]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를 표시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illegible]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구미시장 (참조 : 세무과장)

발 신 :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 상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은닉 세 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세정발전					
	세입증대					

※ 첨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